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3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일정 비율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	3
2. 개정안 부칙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혁진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3. 20.

3. 회 부 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예술 및 체육 분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도 필요한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

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예술 및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학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해야 하고(제5항), 해당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하며(제6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제7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 ④ (생략)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 중 예술 및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특수

<신 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자를 입학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⑧ -----

-----정하고, 제6항에 따른 제공 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 및 체육계열 학교의 입학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2026년 4월말 기준 예술계열 고등학교는 전국에 25개교, 체육계열 고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4. 삭제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9. 삭제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등학교는 17개교로,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예술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58명, 체육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26년 4월 기준)]

(단위: 명)

시도명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총계
서울	11	4	5	20
부산	3	4	2	9
대구	-	-	-	-
인천	1	-	1	2
광주	-	-	2	2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1	-	-	1
경기	2	3	1	6
강원	-	-	-	-
충북	4	6	-	10
충남	-	-	2	2
전북	-	-	-	-
전남	2	1	2	5
경북	-	-	-	-
경남	1	-	-	1
제주	-	-	-	-
총계	25	18	15	58

[체육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26년 4월 기준)]

(단위: 명)

시도명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총계
서울	-	-	-	-
부산	-	2	-	2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총계	-	2	-	2

□ 한편,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예술 및 체육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인 1문화예술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예술단 창단(세종,전남,경북 등), 예술교육고용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장애학생 선수들은 보통 특수학교나 일반학교(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등록을 거쳐, 학생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및 장애인체육회(시·도지부)의 지원을 받아 훈련을 받고 있음.

□ 이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진로를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전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은 모든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무 선발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대상 예술 및 체육 전문교육은 전문 지도인력 및 시설²⁾ 등이 필요하므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인력 지원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안 제6항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수영장 등), 장애인용 웨이트 장비, 전용 편의시설(탈의실 및 샤워장) 등

안 제7항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예술 및 체육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진행중으로,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체육분야)의 경우 2028년 3월,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예술분야)의 경우 2029년 개교될 예정인바, 개정안 심사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 또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행능력 등이 요구되는데,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제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전체 학생의 교육환경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육 관계기관의 의견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학교명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학급수	학생수	개교일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체육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21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2학급)	138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84명)	‘28.3 (예정)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예술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21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2학급)	138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84명)	‘29.(예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 교육부

현재 다수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선발의무를 우선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경우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교육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학교별 지원여건 및 수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과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⁴⁾.

○ 시도교육청

-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남: **신중검토**) 예술 및 체육 분야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 등을 요구하며, 정원 의무화 방식은 장애학생 개인의 교육적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선발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원,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시설확보, 지원 인력 배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제반 지원체계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 특히 기숙사 생활을 요구하는 예술고, 체육고의 경우, 학교 내 편의시설 및 24시간 보조인력 배치가 추가로 요구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없다면 전체 학생의 교육환경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해당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으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기회를 왜곡하거나 선정 과정에 대한 행정적 부담 발생.
- (경기: **일부수정**) 100분의 3 의무선발 기준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의 자체 학교 절대평가 기준을 통해 선발하는 기준안 보완 필요

4) 교육부는 향후 특정 분야(직업교육, 예술, 체육 등)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특성화 특수학교) 지정·운영 및 사회배려자 전형 활성화 등을 통해서도 장애학생의 예술·체육 분야 전문 교육 기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⁵⁾, 개정안의 경우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학급의 설치 및 인력의 채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5)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

참고자료

2026년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선발인원

(단위: 명)

연번	구분	시도명	학교명	26년 선발인원
1	체육고	서울	서울체육고등학교	120
2		부산	부산체육고등학교	105
3		대구	대구체육고등학교	90
4		인천	인천체육고등학교	110
5		광주	광주체육고등학교	104
6		대전	대전체육고등학교	96
7		울산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85
8		경기	경기체육고등학교	90
9		강원	강원체육고등학교	84
10		충북	충북체육고등학교	121
11		충남	충남체육고등학교	81
12		전북	전북체육고등학교	75
13		전남	전남체육고등학교	72
14		전남	한국바둑고등학교	30
15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	40
16		경북	경북체육고등학교	90
17		경남	경남체육고등학교	90
18	예술고	서울	국립국악고등학교	150
19		서울	덕원예술고등학교	200
20		서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38
21		서울	서울예술고등학교	360
22		서울	선화예술고등학교	360
23		서울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180
24		부산	부산예술고등학교	330
25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180
26		부산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160
27		대구	경북예술고등학교	444
28		인천	인천예술고등학교	169
29		광주	광주예술고등학교	130
30		경기	경기예술고등학교	228
31		경기	계원예술고등학교	320
32		경기	고양예술고등학교	280
33		경기	안양예술고등학교	320
34		강원	강원예술고등학교	80
35		충북	충북예술고등학교	100
36		충남	충남예술고등학교	140
37		충남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60
38		전남	진도국악고등학교	36
39		전남	전남예술고등학교	140
40		전남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60
41		경남	경남예술고등학교	109
42		세종	세종예술고등학교	80